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02

발의연월일: 2021. 3. 24.

발 의 자:서일준ㆍ하영제ㆍ정진석

김영식 · 서병수 · 김승수

김형동 • 한무경 • 정점식

이종성・양금희・백종헌

홍준亞・金炳旭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업자,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 또는 비디오물 영업자(이하 "영화업자등"이라 함)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업자등이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 기간이 촉박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해당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음.

이에 영화업자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업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등).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46조의2 및 제64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에 따라	직권말소) ①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	
에는 폐업한 날부터 <u>7일</u> 이내	<u>30일</u>
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
고 및 직권말소) ① 제36조에	고 및 직권말소) ①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u>3</u>
<u>7일</u>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0일
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	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
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u>7일</u> 이내에 문화체육관	<u>30일</u>
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	
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